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2. 6(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3. 11. 01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3. 11. 04
- 라. 상정일자 : 2013. 12. 06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준공예정(2014년 2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수교육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전수교육관의 운영방법과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수교육관 본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자료의 기탁에 관한 사항과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시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과 전수, 후계자 양성과 공연 활동,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총 사업비 20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남구 문학동 일원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2014년(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음. 이에 전수교육관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업 개요〉

-
- 총사업비 : 20,940백만원(국비 8,412/시비 12,528) ※ 국 : 시 = 5 : 5
 - 위 치 : 남구 문학동 349-6번지 외 9필지
 - 건립기간 : 2007~2014. 2월
 - 규 모 : 사업면적 8,710.3m²(부지 4,381.3m²), 건축연면적 6,874.3m²
- 3개동 : 예능동1 (지하1층, 지상3층), 기능동2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공방, 회의실, 사무실 등
-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전수교육관의 업무와 기능, 안 제5조는 위탁운영의 근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자료 기탁, 안 제13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조례입법의 명확성, 체계성,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일부 자구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정의견
<p>제2조(정의) (생략)</p> <p>1.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u>인천광역시에서</u>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 ----- ----- --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 -----<u>시</u>----- -----.</p> <p>2.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p> <p>1. (생략)</p> <p>2. <u>전수교육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날</u></p> <p>② (생략)</p>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u></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본관시설 사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7조(본관시설 사용)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비용은 <u>사용·수익하는 자가</u> ----- -----.</p>

제 정 안	수정의견
<p>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u>시장</u>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u>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④ (생략)</p> <p>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u>시장</u>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u>시장</u>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2조(기탁) ① (생략)</p> <p>② 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명할 수 있다.</p> <p>③ 기탁자료 등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u>아니하며</u>,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p>	<p>제12조(기탁)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u>은 기탁자에게 ----- -----.</p> <p>③ ----- ----- <u>아니</u>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장과 기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략)</p> <p>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위원장이</u> <u>따로</u> 정한다.</p>	<p>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 ----- 거쳐 정한다.</p>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실적 및 전수교육관 관리·운영계획

I.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실적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문학동 349-6번지 외 9필지
- 건립기간 : 2007~2014. 2월
- 규 모 : 사업면적 8,710.3m²(부지 4,381.3m²), 건축연면적 6,874.3m²
- 3개동 : 예능동1 (지하1층, 지상3층), 기능동2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공방, 회의실, 사무실 등
- 총사업비 : 20,940백만원(국비 8,412/시비 12,528) ※ 국 : 시 = 5 : 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20,940	350	-	176	148	5,700	6,000	7,400	1,166
재원	국비	8,400	175	-	-	-	700	3,000	3,700	825
	시비	12,540	175	-	176	148	5,000	3,000	3,700	341

추진실적

- 2007. 1.17 : 2007년도 균특회계 국고보조금(무형문화재 전수지원) 확정통지(350,000천원 - 국비 175,000/지방비 175,000)
- 2007. 1.17~4. 6 :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 2007.10.17 :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통보(180억)
- 2009.12. 2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계용역 공고
- 2010. 7. 8 : 기본설계용역 최종(안) 선정
- 2011. 7. 6 :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사업 2차 설계심사 관련 회신(문화재청→)

- 총사업비 20,928백만원(국비 8,400백만원, 지방비 12,528백만원)
- 2011. 8월~9월 : 문화재심의 및 건축심의
- 2011. 10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 2012. 4.17 : 공사 계약[(주)디에이치종합건설]
- 2012. 4.18 : 감리 계약[(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웬코엔지니어링]
- 2012. 4.30 : 공사착공 (기공식 : 2012. 5. 9)
- 2013. 4월 : 골조공사 완료
- 2013. 9월 : 지붕공사 완료 및 내부 마감공사 진행
- 2013. 10월 : 무형문화재 3개 종목 신규지정에 따른 추가증축 설계변경
 - ※ 공정률 : 71.2%

향후계획

- 2014. 2월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사준공(예정)

II.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계획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문학동 349-6번지 외 9필지
- 규 모 : 부지 4,381.3m², 건축연면적 6,874.3m²
 - 3개동 : 예능동1, 기능동2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공방, 회의실, 사무실 등

운영계획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중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의뢰
 - 2014년 상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 연구과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신현환, 강병수, 제갈원영 위원

-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인력, 조직 등에 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변 >

○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 현재 전수교육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이며, 향후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김기홍, 박순남, 신동수, 제갈원영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중 “시” 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안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안 제7조제2항 중 “비용은” 다음 “사용·수익하는 자가”를 삽입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시장은”을 삭제하고, “제1항에” 앞에 “시장은”을 삽입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시장은”을 삭제하고, “제4항의” 앞에 “시장은”을 삽입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기탁자에게는”을 “시장은 기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를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장과 기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3조제5항 중 “위원장이 따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u>인천광역시</u>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 ----- ----- <u>인천광역시</u> (이하 “시”라 한다)----- <u>시</u>----- -----.</p> <p>2.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p> <p>1. (생략)</p> <p>2. <u>전수교육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u>고 시장이 지정하는 날</p> <p>② (생략)</p>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u></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본관시설 사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7조(본관시설 사용)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u>비용은 사용·수익하는 자가</u> ----- -----.</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u>시장은</u>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은</u>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④ (생략)</p> <p>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u>시장은</u>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u>시장은</u>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2조(기탁) ① (생략)</p> <p>② <u>기탁자에게는</u>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p> <p>③ <u>기탁자료 등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u></p>	<p>제12조(기탁)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은 기탁자에게</u> ----- -----.</p> <p>③ ----- ----- <u>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장과 기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u></p>
<p>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략)</p> <p>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위원장이</u> 따로 정한다.</p>	<p>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 ----- 거쳐 정한다.</p>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 한다.

가. 본관시설 : 기능동, 예능동 및 그 부속시설물

나. 부대시설 : 대강당, 상설전시장,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물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을 위해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무형문화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5.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예능보유자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조(본관시설 사용)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받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또는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사용·수익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받은 경우
4. 사용·수익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轉貸)한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부대시설 사용료) 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주최 ·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탁)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수·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
③ 기탁자료 등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장과 기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전수교육관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대강당	오전(1시간)	20,000	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전(08: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2:00) - 전일(08:00~22:00) 마.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오후(1시간)	30,000	
	야간(1시간)	40,000	
	전일	200,000	
상설 전시장	1일 평당	기본료	400
		조명	100
		난방	300
		냉방	300
전통문화 체험관	오전(1시간)	20,000	
	오후(1시간)	25,000	
	야간(1시간)	30,000	
	전일	150,000	
야외 공연장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전일	10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난방	1시간	15,000	가. 난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방 : 6월 ~ 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 마이크 2대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1대 추가 시 5,000원)
냉방	1시간	15,000	
음향시설	회	20,000	
조명시설	1시간	20,000	

3.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 불 기 준	비 고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가. 사용료 전액환급 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개인·기관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번호	
		소제지 또는 대표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오전·오후·야간·전일 (:)~(:)		출연 및 참석인원	명	
사용시설	대강당()상설전시장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사 용 료 내 역	시설명	사용시간	산출내역	사용료	비고
사용료 반환	환불금액		환불계좌		
	반환사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개인·기관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단체 주소			
행사명			
행사목적 또는 행사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시설	대강당()상설전시장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감면신청사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 귀하